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2년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전월대 비 0.3% 감소

○ 2012년 6월 생산은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광  
 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8.2%), 영상음향통신(-5.9%),  
 비금속광물(-6.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8.6%), 1차 금속(2.6%), 자동차(1.5%)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4.2%), 협회·수  
 리·개인(-2.5%), 도·소매(-0.4%) 등에서 감소하였  
 으나 하수·폐기물처리(10.1%), 예술·스포츠·여  
 가(5.2%), 보건·사회복지(5.0%), 금융 및 보험업  
 (1.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2012년 6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준내구재(-0.1%)는 감소하였으  
 나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1.6%),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4%)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부진하  
 여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  
 (경상)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발주가 감소하였으  
 나 신규주택, 철도, 도로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  
 월대비 2.6% 증가함.

- 6월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수입액, 내수 출하지수 등은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함. 6월 선행종합지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코스피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함.

◆ 2012년 2/4분기 생산과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7%, 1.0% 증가한 반면 투자는 0.7% 감소

- 2012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협회·수리·개인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 소비는 컴퓨터·통신기기, 가구 등 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늘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고, 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류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함.

◆ 201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생활물가지수 0.8% 상승)

- 201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여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시현
  -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5.5%), 통신(-3.4%)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5.0%), 주택·수도·전기·연료(4.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4%), 교육(1.4%), 교통(1.2%)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
  - － 2012년 7월 생활물가지수는 105.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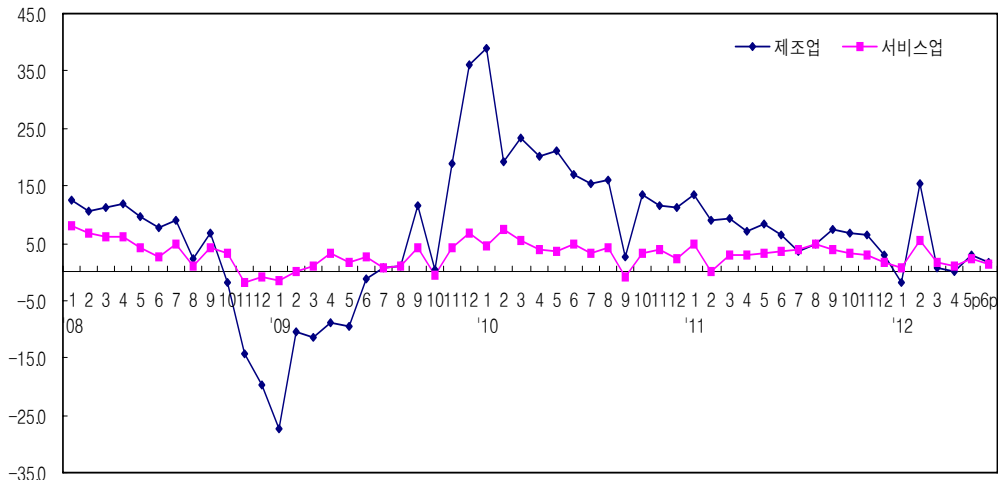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6월	1/4	2/4p	6월p	
생 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6.4	3.8	1.5	1.6(-0.4)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6.3	4.2	1.5	1.6(-0.5)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5.4	3.3	1.4	1.8(-0.8)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3.1	0.3	-1.5	-2.1(-1.1)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8.2	6.7	4.9	6.6(-0.6)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3.4	2.5	1.5	1.2(-0.4)
소 비 투 자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5.8	2.0	1.0	0.6(-0.5)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3.5	9.4	-0.7	-5.6(-6.3)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4.5	3.0	2.4	1.5(-0.2)	

-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7월 기준임.
-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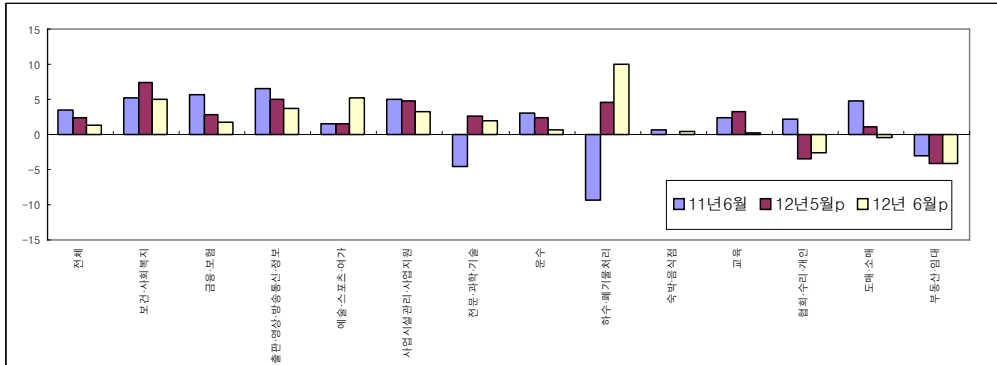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7), 『2012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9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8천 명(1.7%)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69천 명으로 247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33천 명으로 181천 명(1.7%) 증가하였음.
- 2012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50.9%)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7월 중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7월 중 취업자는 25,1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0천 명(1.9%)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6천 명(1.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5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4천 명(1.9%)이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2년 7월 중 실업자는 7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천 명(-5.0%)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5.5%)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9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 명(-4.2%)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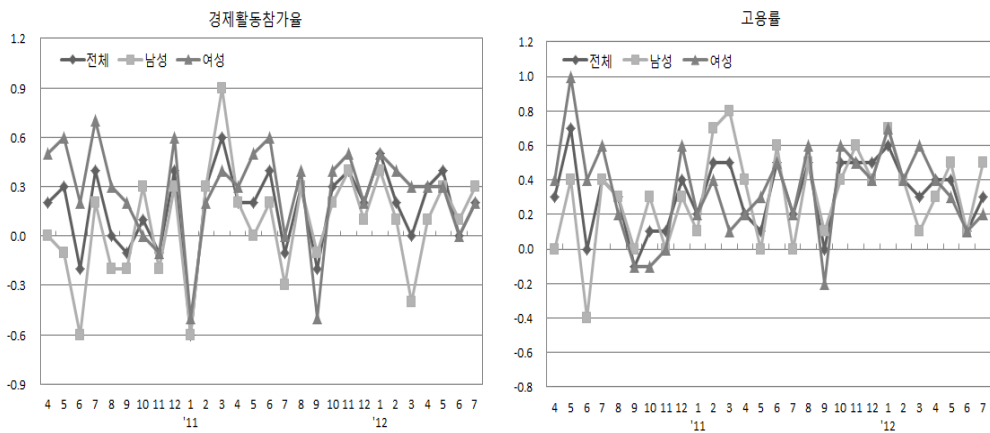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473 (1.0)	25,202 (1.6)	24,873 (1.6)	25,844 (1.6)	25,939 (1.4)	25,901 (1.7)
참가율	59.9	62.0	61.5	62.0	61.1	60.1	62.3	62.4	62.2
취업자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636 (1.4)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17 (1.5)	25,106 (1.9)
고용률	57.4	59.9	59.5	60.0	59.4	57.8	60.2	60.4	60.3
실업자	1,028	865	786	837	740	947	841	822	795
실업률	3.9	3.4	3.1	3.3	2.9	3.8	3.3	3.2	3.1
비경제활동인구	16,392 (0.8)	15,559 (0.4)	15,847 (1.2)	15,614 (1.5)	16,014 (0.3)	16,495 (0.6)	15,669 (0.7)	15,622 (1.2)	15,727 (0.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2. 8), 『2012년 7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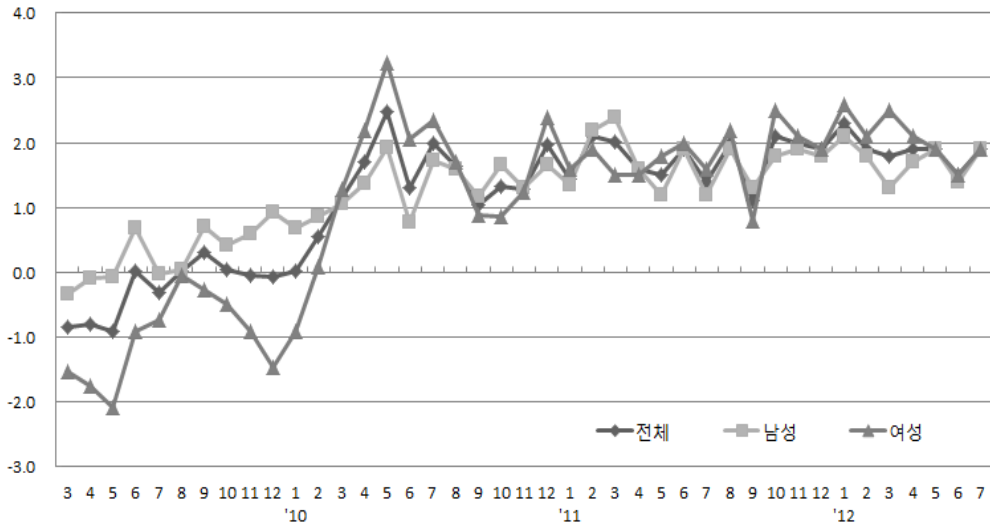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천 명(0.7%)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0.2%)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천 명(1.0%)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 감소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2천 명(-5.9%)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16천 명으로 12천 명(0.3%) 증가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 11개월 만에 증가**

○ 2012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8천 명, 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천 명, 0.7%), 제조업(34천 명, 0.8%), 건설업(27천 명, 1.5%), 농림어업(13천 명, 0.8%)에서 증가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6월	7월
전 산업	23,459 ( 1.8)	24,572 ( 1.7)	24,483 ( 1.5)	24,636 ( 1.4)	24,462 ( 2.0)	23,927 ( 2.0)	25,003 ( 1.8)	25,117 ( 1.5)	25106 ( 1.9)
농림어업	1,207 (-2.3)	1,736 ( 0.2)	1,704 (-2.9)	1,699 (-3.1)	1,521 (-1.5)	1,176 (-2.6)	1,713 (-1.4)	1,770 (-1.2)	1,712 ( 0.8)
제조업	4,139 ( 5.8)	4,127 ( 2.8)	4,041 (-0.3)	4,079 ( 1.0)	4,056 (-1.8)	4,037 (-2.5)	4,061 (-1.6)	4,084 (-1.2)	4,114 ( 0.8)
건설업	1,641 (-0.2)	1,774 (-2.3)	1,755 (-2.0)	1,754 (-3.1)	1,832 ( 4.0)	1,721 ( 4.8)	1,807 ( 1.9)	1,815 ( 0.8)	1,781 (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71 (-1.1)	5,457 (-0.1)	5,496 ( 1.0)	5,581 ( 0.5)	5,542 ( 1.8)	5,571 ( 1.8)	5,596 ( 2.6)	5,594 ( 2.2)	5,638 (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097 ( 3.0)	8,529 ( 2.8)	8,473 ( 2.8)	8,518 ( 2.3)	8,486 ( 3.1)	8,398 ( 3.7)	8,820 ( 3.4)	8,840 ( 3.0)	8,836 ( 3.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80 ( 1.6)	2,933 ( 3.6)	3,001 ( 6.6)	2,991 ( 6.9)	3,011 ( 5.5)	3,011 ( 4.5)	2,991 ( 2.0)	2,999 ( 1.3)	3,010 ( 0.7)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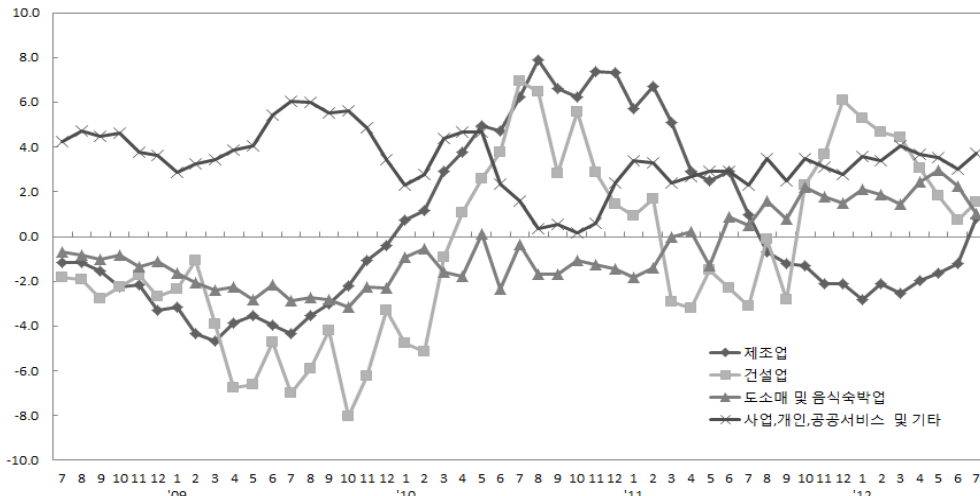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2. 8), 『2012년 7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년동월대비 11개월째 자영업 증가 지속 및 13개월 만에 무급가족종사자 증가

- 2012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1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7천 명(3.3%)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9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1.4%)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153천 명으로 435천 명(4.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81천 명으로 56천 명(-1.1%)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76천 명으로 135천 명(-7.5%)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자영업자는 5,863천 명으로 196천 명(3.5%)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333천 명으로 31천 명(2.4%) 증가하였음(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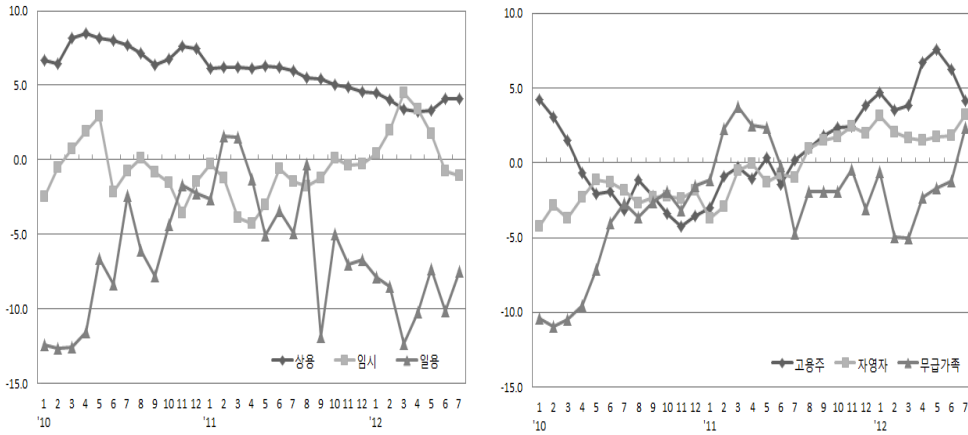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6월	7월
전 체	23,459 ( 1.8)	24,572 ( 1.7)	24,483 ( 1.5)	24,636 ( 1.4)	24,462 ( 2.0)	23,927 ( 2.0)	25,003 ( 1.8)	25,117 ( 1.5)	25,106 ( 1.9)
비임금근로자	6,542 (-1.5)	7,004 (-0.3)	6,965 (-0.4)	6,969 (-1.5)	6,878 ( 1.5)	6,650 ( 1.6)	7,154 ( 2.1)	7,185 ( 2.2)	7,196 ( 3.3)
자영업주	5,399 (-2.1)	5,657 (-0.7)	5,680 ( 0.6)	5,667 (-0.7)	5,639 ( 2.3)	5,548 ( 2.8)	5,830 ( 3.1)	5,837 ( 3.0)	5,863 ( 3.5)
무급가족종사자	1,143 ( 1.7)	1,348 ( 1.5)	1,285 (-4.7)	1,302 (-4.7)	1,239 (-2.0)	1,102 (-3.6)	1,324 ( -1.8)	1,348 ( -1.2)	1,333 ( 2.4)
임금근로자	16,917 ( 3.2)	17,568 ( 2.5)	17,518 ( 2.3)	17,667 ( 2.5)	17,585 ( 2.2)	17,277 ( 2.1)	17,849 ( 1.6)	17,932 ( 1.2)	17,911 ( 1.4)
상용근로자	10,413 ( 6.2)	10,681 ( 6.2)	10,731 ( 5.6)	10,718 ( 6.0)	10,820 ( 4.8)	10,825 ( 4.0)	11,059 ( 3.5)	11,157 ( 4.1)	11,153 ( 4.1)
임시근로자	4,804 (-1.8)	5,041 (-2.7)	5,072 (-1.5)	5,137 (-1.5)	5,042 (-0.2)	4,914 ( 2.3)	5,114 ( 1.4)	5,094 (-0.7)	5,081 (-1.1)
일용근로자	1,701 ( 0.1)	1,846 (-3.3)	1,716 (-5.7)	1,811 (-4.9)	1,723 (-6.3)	1,538 (-9.6)	1,675 (-9.3)	1,681 (-10.2)	1,676 (-7.5)
36시간 미만	3,246 (-33.1)	3,210 ( 0.4)	8,464 (154.2)	3,562 ( 4.1)	3,217 ( 4.1)	3,313 ( 2.1)	3,284 ( 2.3)	3,196 ( 0.5)	3,564 ( 0.0)
36시간 이상	19,739 ( 11.7)	21,067 ( 1.7)	15,419 (-24.3)	20,602 ( 0.4)	20,937 ( 1.5)	20,081 ( 1.7)	21,425 ( 1.7)	21,613 ( 1.6)	21,134 ( 2.6)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2. 8), 『2012년 7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0.0%)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134천 명으로 532천 명(2.6%) 증가하였음.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65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감소**

- 2012년 7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7.3%, -0.3%p), 30대(2.9%, -0.2%p), 40대(1.8%, -0.2%p), 60세 이상(2.0%, -0.5%p)에서 감소함.
  - 50대(2.1%, 0.1%p)는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1%, -0.2%p), 고졸(3.6%, -0.5%p)에서 감소하고 대졸 이상(3.0%, 0.1%p)에서는 증가함.
- 2012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79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53천 명으로 20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6월	7월	
전 체	1,028(4.2)	865(3.4)	786(3.1)	837(3.3)	740(2.9)	947(3.8)	841(3.3)	822(3.2)	795(3.1)	
15~29세	372(8.8)	332(7.9)	284(6.7)	332(7.6)	292(7.1)	346(8.2)	341(8.1)	323(7.7)	314(7.3)	
30~39세	237(4.0)	211(3.5)	189(3.2)	184(3.1)	171(2.9)	190(3.2)	188(3.2)	180(3.0)	173(2.9)	
40~49세	167(2.5)	145(2.1)	138(2.0)	138(2.0)	131(1.9)	164(2.4)	135(2.0)	141(2.1)	122(1.8)	
50~59세	133(2.7)	107(2.0)	108(2.1)	107(2.0)	94(1.8)	124(2.3)	112(2.0)	113(2.0)	118(2.1)	
60세 이상	119(4.5)	70(2.3)	67(2.1)	77(2.5)	53(1.8)	124(4.4)	66(2.0)	65(1.9)	68(2.0)	
중졸 이하	195(4.1)	112(2.1)	119(2.3)	118(2.3)	108(2.1)	187(4.0)	112(2.2)	105(2.0)	106(2.1)	
고졸	465(4.6)	408(4.0)	372(3.7)	423(4.1)	349(3.5)	408(4.1)	356(3.5)	365(3.6)	373(3.6)	
대졸 이상	369(3.8)	345(3.4)	296(2.9)	296(2.9)	284(2.8)	352(3.4)	373(3.5)	352(3.3)	316(3.0)	
취업무경험실업자	52	45	45	64	44	58	48	43	42	
취업유경험실업자	977	820	741	773	696	889	793	779	753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2. 8), 『2012년 7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2년 5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 2012년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2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600천 원) 4.7%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8% 상승해 2,448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여 188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1.0% 상승하여 258천 원을 기록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상승하여 2011년 5월 대비 4.9% 상승한 2,893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한 1,23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5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40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761천 원)대비 6.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5월 누계 대비 6.6% 상승한 3,11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2011년 1~5월 누계 대비 5.8%, 초과급여는 3.2%, 특별급여는 12.3%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5월 누계 대비 9.2% 상승한 1,275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5월 실질임금은 2.2% 증가함.
  - 2012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2%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2012년 1~5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6%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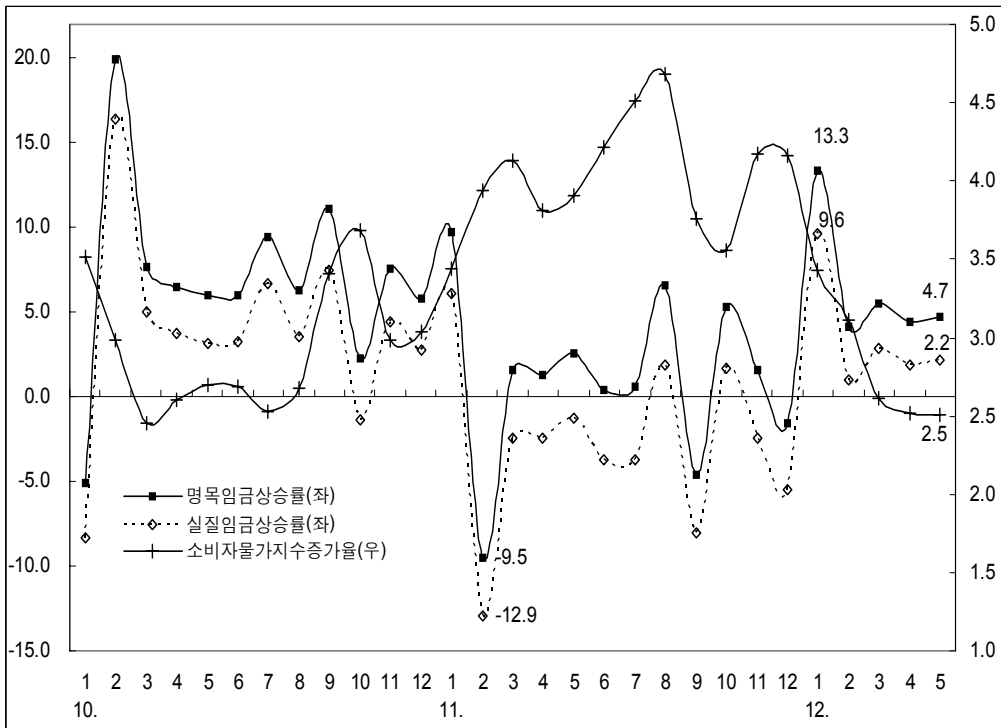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5월 누계	5월	1~5월 누계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 2.6)	2,816 ( 6.8)	2,844 ( 1.0)	2,761 ( 0.9)	2,600 ( 2.3)	2,940 ( 6.5)	2,723 ( 4.7)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 2.2)	3,047 ( 6.4)	3,019 (-0.9)	2,921 (-1.1)	3,113 ( 6.6)	2,893 ( 4.9)	
	정액급여	2,139 ( 4.0)	2,234 ( 4.5)	2,341 ( 4.8)	2,310 ( 4.3)	2,314 ( 4.2)	2,443 ( 5.8)	2,448 ( 5.8)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4 (-7.7)	187 (-2.7)	179 ( 3.2)	188 ( 0.4)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37 (-20.7)	255 (-23.8)	491 (12.3)	258 ( 1.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 1.9)	1,056 (-1.6)	1,215 (15.1)	1,168 (10.3)	1,207 (15.2)	1,275 ( 9.2)	1,233 ( 2.2)	
소비자물가지수	97.1 ( 2.8)	100.0 ( 2.9)	104.0 ( 4.0)	103.1 ( 3.8)	103.6 (3.9)	106.0 ( 2.8)	106.2 ( 2.5)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2.9	-1.3	3.6	2.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2년 5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5월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음.
  - 2012년 5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8%), 사업서비스업(7.5%), 부동산업 및 임대업(7.2%)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5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5월 누계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9.5%), 운수업(9.2%), 제조업(8.8%)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5월 누계	5월		
전 산업	2,816 ( 6.8)	2,844 ( 1.0)	2,761 ( 0.9)	2,600 ( 2.6)	2,940 ( 6.5)	2,723 ( 4.7)
광업	3,000 ( 7.3)	3,309(10.3)	3,107(11.1)	3,170(20.2)	3,334 ( 7.3)	3,438 ( 8.5)
제조업	2,985 ( 9.1)	3,034 ( 1.6)	2,890 ( 1.7)	2,661 ( 3.9)	3,144 ( 8.8)	2,803 ( 5.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 7.0)	5,482 ( 0.5)	4,682 ( 1.3)	4,152 ( 2.8)	4,803 ( 2.6)	4,275 ( 2.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 5.2)	2,488 ( 1.9)	2,386 ( 1.1)	2,369 ( 4.1)	2,552 ( 7.0)	2,526 ( 6.6)
건설업	1,944 ( 7.9)	2,181(12.2)	2,171(12.4)	2,094(18.6)	2,250 ( 3.6)	2,099 ( 0.2)
도매 및 소매업	2,769 ( 7.1)	2,942 ( 6.3)	2,819 ( 3.7)	2,693 ( 9.3)	3,027 ( 7.4)	2,826 ( 4.9)
운수업	2,381 ( 5.4)	2,393 ( 0.5)	2,294 ( 0.6)	2,236 ( 4.3)	2,504 ( 9.2)	2,367 ( 5.9)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 5.0)	1,653(13.0)	1,608(12.5)	1,605(15.2)	1,677 ( 4.2)	1,630 ( 1.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 4.7)	3,692 ( 9.1)	3,681(10.5)	3,664(11.4)	3,883 ( 5.5)	3,696 ( 0.9)
금융 및 보험업	4,680 ( 4.7)	4,771 ( 1.9)	4,810 ( 0.4)	4,469 ( 0.0)	5,030 ( 4.6)	4,587 (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 4.3)	2,017 ( 2.6)	1,980 ( 6.1)	1,903 ( 5.8)	2,168 ( 9.5)	2,039 ( 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 6.9)	3,870(-2.2)	3,677(-3.0)	3,478(-5.7)	3,977 ( 8.2)	3,818 ( 9.8)
사업서비스업	1,848 ( 8.2)	1,700(-8.0)	1,654(-8.3)	1,618(-6.2)	1,755 ( 6.1)	1,740 ( 7.5)
교육서비스업	3,157 ( 1.4)	2,985(-5.4)	3,025(-5.5)	2,798(-4.4)	3,132 ( 3.5)	2,909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 2.4)	2,490(-4.0)	2,429(-4.6)	2,338(-4.8)	2,586 ( 6.4)	2,481 ( 6.2)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 0.9)	2,130 ( 1.1)	2,051 ( 0.6)	1,919(-1.9)	2,125 ( 3.6)	2,020 ( 5.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 4.0)	2,185 ( 3.9)	2,140 ( 4.3)	2,054 ( 8.5)	2,206 ( 3.1)	2,092 ( 1.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2년 5월 사업체 전 규모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5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5월 기준 2,69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하였으며, 정액급여(6.3%), 초과급여(3.6%), 특별급여(8.3%) 모두 증가한 영향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5월 상용임금총액은 3,638천 원으로 2011년 5월 대비 1.8%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4.4%)의 상승에 기인함.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5.4%)와 특별급여(-8.9%)는 감소함.
- 2012년 1~5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5%)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5.2%)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는 마이너스 상승(-1.8%)을 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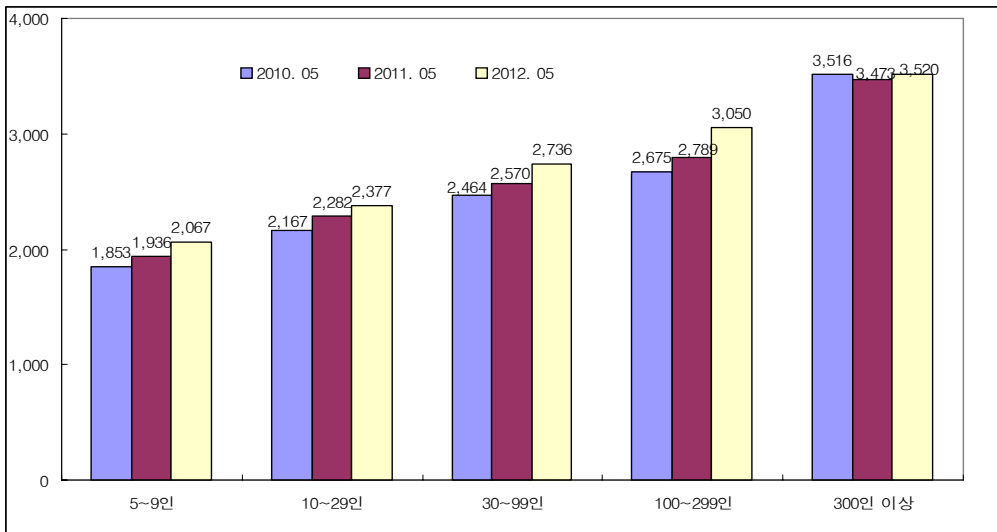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5월 누계		5월	
				1~5월 누계	5월	1~5월 누계	5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 6.4)	3,019 ( -0.9)	2,921 ( -1.1)	2,757 ( 0.0)	3,113 ( 6.6)	2,893 ( 4.9)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310 ( 4.3)	2,314 ( 4.2)	2,443 ( 5.8)	2,448 ( 5.8)
	초과급여	196 (12.2)	179 ( -8.4)	174 ( -7.7)	187 ( -7.5)	179 ( 3.2)	188 ( 0.4)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437 (-20.7)	255 (-23.8)	491 (12.3)	258 ( 1.0)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 15.1)	1,168 ( 10.3)	1,207 ( 15.2)	1,275 ( 9.2)	1,233 ( 2.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 5.5)	2,675 ( -0.9)	2,606 ( -0.9)	2,534 ( 1.2)	2,776 ( 6.5)	2,694 ( 6.3)
	정액급여	2,082 ( 4.3)	2,204 ( 5.9)	2,174 ( 5.5)	2,187 ( 5.5)	2,308 ( 6.2)	2,325 ( 6.3)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46 (-14.3)	157 (-14.2)	153 ( 4.8)	162 ( 3.6)
	특별급여	441 ( 8.4)	321 (-27.3)	286 (-28.3)	191 (-23.6)	315 (10.1)	207 ( 8.3)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 14.8)	1,169 ( 10.4)	1,211 ( 15.1)	1,284 ( 9.8)	1,241 ( 2.5)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 9.1)	4,273 ( -0.4)	4,112 ( 0.3)	3,575 ( -2.3)	4,326 ( 5.2)	3,638 ( 1.8)
	정액급여	2,779 ( 5.2)	2,842 ( 2.3)	2,824 ( 2.5)	2,784 ( 1.3)	2,928 ( 3.7)	2,907 ( 4.4)
	초과급여	268 ( 9.6)	286 ( 6.7)	280 ( 10.5)	299 ( 10.0)	275 (-1.8)	283 (-5.4)
	특별급여	1,245 (18.7)	1,146 ( -8.0)	1,009 ( -7.7)	492 (-22.9)	1,123 (11.3)	449 (-8.9)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 17.8)	1,154 ( 9.1)	1,157 ( 16.7)	1,173 ( 1.6)	1,153 (-0.4)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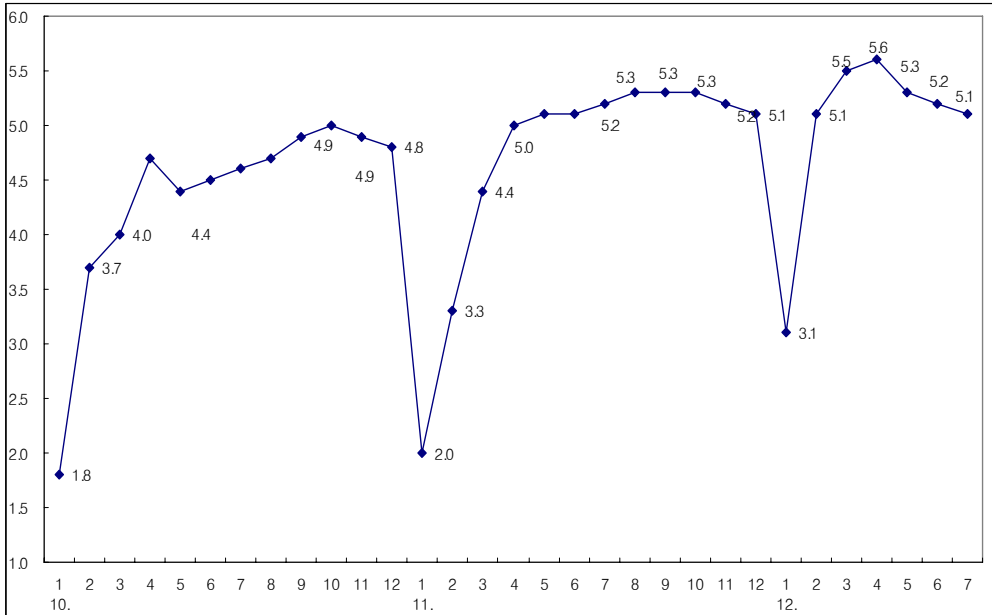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 5.1%

- 2012년 7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1년 7월 인상률(5.2%)에 비해 0.1%p 하락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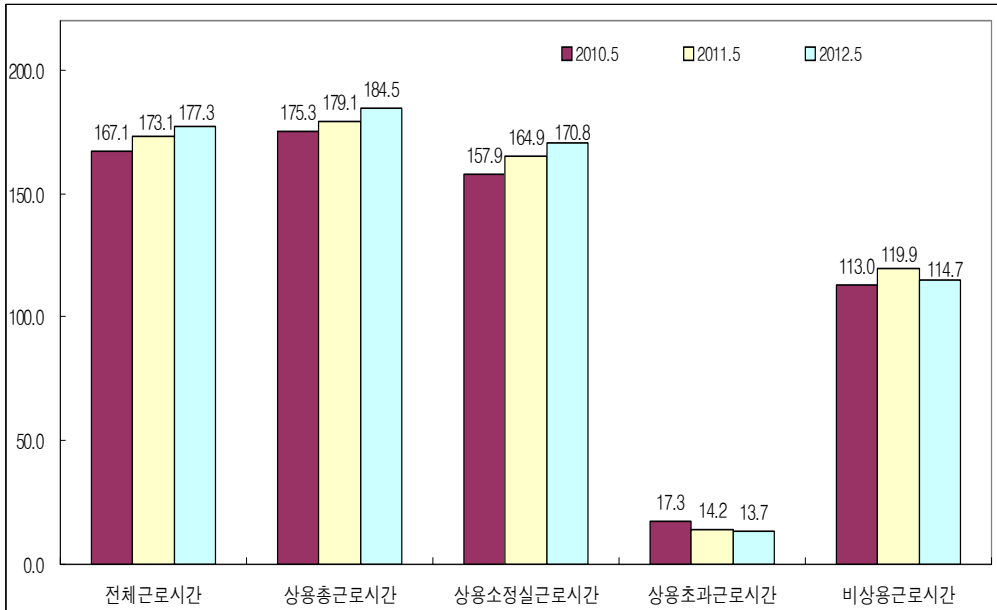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5월 근로시간, 2.4% 증가

- 2012년 5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함.
  - 2012년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7.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3.1시간)에 비해 4.2시간(2.4%) 증가함(그림 10 참조).
  - 근로시간의 증가는 2011년 5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1일 많은 데 기인함.
- 2012년 1~5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함.
  - 2012년 1~5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4.1시간)에 비해 0.6시간(0.3%)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5월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2년 5월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5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80.6시간, 9.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7.4시간, 6.1%)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2012년 5월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47.0시간, -2.8%), 숙박 및 음식점업(188.5시간, -1.3%)임.
  - 2012년 5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8.7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47.0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5월 누계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5월 누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73.2시간, 3.2%), 운수업(181.9시간, 2.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4, 2.0%)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건설업(150.7시간, -2.1%), 제조업(187.8시간, -0.5%)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5월 누계		5월	
			1~5월 누계	5월	1~5월 누계	5월
전 산업	176.7( 0.3)	176.3(-0.2)	174.1( 0.1)	173.1( 3.6)	174.7( 0.3)	177.3( 2.4)
광업	188.1( 0.3)	186.9(-0.6)	183.9(-0.6)	188.1( 2.2)	186.0( 1.1)	189.3( 0.6)
제조업	192.1( 1.9)	190.6(-0.8)	188.7(-0.2)	190.0( 3.2)	187.8(-0.5)	191.8( 0.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 0.1)	173.8(-0.1)	165.3(-0.1)	176.2( 1.4)	180.6( 9.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3.7(-3.4)	186.2( 1.4)	185.2( 0.8)	188.6( 1.3)
건설업	146.1(-0.7)	153.9( 5.3)	153.9( 5.2)	151.3( 7.5)	150.7(-2.1)	147.0(-2.8)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2.5(-1.0)	171.1( 1.8)	174.0( 0.9)	176.3( 3.0)
운수업	184.6( 0.1)	181.6(-1.6)	177.0(-3.0)	175.6(-1.2)	181.9( 2.8)	185.7( 5.8)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4.9(14.9)	190.9(19.8)	187.1( 1.2)	188.5(-1.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1.8(-1.2)	159.8( 3.6)	163.5( 1.1)	167.6( 4.9)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59.9(-1.6)	157.5( 4.0)	163.1( 2.0)	166.5( 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2.7(-3.1)	192.0(-0.6)	195.1( 1.2)	198.7( 3.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3.1(-0.2)	160.9( 4.5)	165.5( 1.5)	170.0( 5.7)
사업서비스업	180.1( 0.6)	172.1(-4.4)	167.8(-4.7)	166.8(-1.1)	173.2( 3.2)	176.0( 5.5)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 2.0)	149.6( 1.8)	145.5( 5.9)	151.0( 0.9)	154.0(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 0.1)	173.5(-1.7)	170.9(-1.2)	167.2( 1.3)	174.4( 2.0)	177.4( 6.1)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5.1(-1.0)	155.6( 1.3)	156.6( 1.0)	159.1( 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3.0( 1.1)	171.5( 6.3)	170.0(-1.7)	175.3( 2.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5월 전 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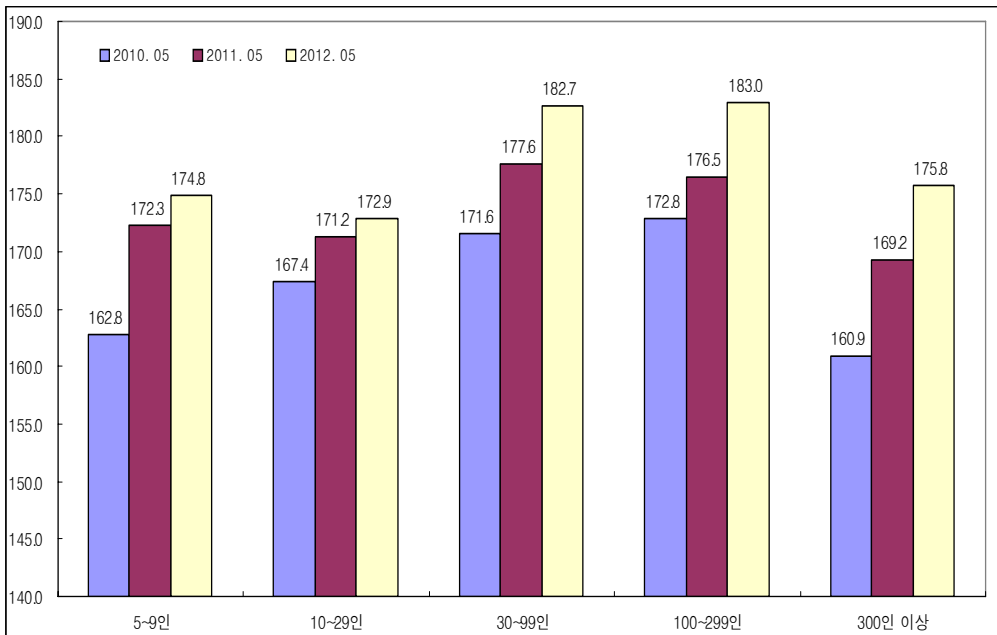
- 2012년 5월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체 모두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3.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2년 1~5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10~2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3%,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3%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8% 증가함.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1% 감소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가계수지 동향

### ◆ 2012년 2/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2년 2/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7.5%), 재산소득(32.1%), 이전소득(5.1%)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2% 증가(실질로는 3.7%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고용개선(취업자 증가(전년동기대비 430천 명) 및 상용근로자 구성비 증가(0.8%p))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6.2%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4.8%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기타상품·서비스 비목에서 1.2%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비목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음(실질로는 1.1% 증가).

〈표 10〉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11		2012			
	1/4분기		1/4분기		2/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713.5	4.7	4,123.5	6.9	3,942.3	6.2
경상소득	3,577.9	4.7	3,946.3	7.4	3,800.2	6.2
근로소득	2,388.0	4.8	2,691.0	8.2	2,566.7	7.5
사업소득	835.5	2.8	833.9	2.6	856.6	2.5
재산소득	16.1	17.5	19.3	3.7	21.2	32.1
이전소득	338.3	7.9	402.0	12.1	355.7	5.1
비경상소득	135.6	7.3	177.3	-2.5	142.0	4.8
소비지출	2,303.7	4.3	2,568.3	5.3	2,386.1	3.6
비소비지출	700.8	6.3	790.3	7.3	723.5	3.2
처분가능소득	3,012.6	4.4	3,333.2	6.8	3,218.8	6.8
흑자액	708.9	4.6	765.0	12.2	832.7	17.5
흑자율	23.5	0.1p	23.0	1.1p	25.9	2.3p
평균소비성향	76.5	-0.1p	77.0	-1.1p	74.1	-2.3p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2. 8), 『2012년 2/4분기 가계동향』.

-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8.8%), 연금(7.7%), 사회보험(6.5%)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한 이자비용 지출이 10.1% 증가하였음.
- 2/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 2012년 2/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1~2분위의 소득 증가율(7.4%~10.1%)이 3~5분위의 소득증가율(5.6%~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높은 증가세(5.5%~12.4%)를 보였으며, 가처분소득은 1분위 증가율(11.3%)이 5분위 증가율(5.9%)을 상회함.

〈표 11〉 2012년 2/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가구원 수	2.59명		3.18명		3.41명		3.57명		3.67명	
가구주 연령	57.3세		47.0세		46.9세		45.6세		48.4세	
소득	1,275.9	10.1	2,631.0	7.4	3,594.4	5.8	4,716.0	5.7	7,491.2	5.6
경상소득	1,211.9	9.3	2,582.6	7.6	3,522.2	5.7	4,635.0	6.0	7,046.8	5.6
근로소득	566.7	8.4	1,602.3	12.4	2,329.7	6.6	3,228.4	9.1	5,104.5	5.5
비경상소득	64.0	29.2	48.3	-2.8	72.2	8.4	81.0	-10.5	444.5	5.6
가계지출	1,480.7	6.9	2,345.4	4.3	2,883.1	0.3	3,697.7	2.4	5,139.2	4.9
소비지출	1,239.1	7.1	1,900.7	3.7	2,278.5	-0.1	2,816.9	3.2	3,694.1	5.1
비소비지출	241.7	5.6	444.7	6.8	604.6	2.0	880.9	0.1	1,445.0	4.4
처분가능소득	1,034.3	11.3	2,186.3	7.5	2,989.8	6.6	3,835.1	7.1	6,046.2	5.9
흑자액	-204.8	9.8	285.6	42.2	711.3	35.8	1,018.2	19.6	2,352.1	7.3
흑자율	-19.8	4.6p	13.1	3.2p	23.8	5.1p	26.6	2.8p	38.9	0.5p
평균소비성향	119.8	-4.6p	86.9	-3.2p	76.2	-5.1p	73.4	-2.8p	61.1	-0.5p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3천 명 신규채용”을 둘러싼 논란 심화

-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법으로 오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천 명을 단계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원·하청 공정 재배치를 통해 진성도급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음.
  - 현대자동차는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는 정부기관 및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016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천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며 “회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함.
    - ※ 8월 21일 현대자동차는 채용 시기를 2015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수정 공지함.
  - 이어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운영을 위해 공정 분리 등 작업공정의 합리적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과급이나 도급이나를 두고 법적 논란을 일으킨 직영과 하도급의 혼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힘.
-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계획을 바라보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우선 현대차지부는 내부적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는 물꼬를 튼다는 점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가 다소 강한 것으로 알려짐.
    -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일단 직접고용할 수 있는 물꼬를 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발생하는 신규 소요인원을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에서 채용한다면 몇 년 내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라지지 않겠냐”며 다소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하에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거나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추가적인 장치들을 통해 실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지부가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비해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불법파견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 없이 신규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은 그동안의 불법적 고용에 대한 은폐라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임.

- 비정규직지회는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진성도급화로 평생 비정규직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며 회사의 계획을 비난하고 있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과건으로 일했던 만큼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논리가 전제되어 있음. 박헌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불법과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0년 넘게 싸워 얻은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고 우려를 표함.
- 지회는 또한 현대차의 신규채용 계획은 정규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안으로 볼 수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과건 문제가 희석화되고 기존 경력도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6천 800명(노조 추산 8천명) 중 일부만 정규직이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지회 관계자는 “3천 명이 정규직이 되더라도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현대차 제안은 불법과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말함.
- 아울러 지회는 불법과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문제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회사가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노사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신규채용’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

- 우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불법과건 특별교섭’ 문제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지난 8월 24일 현대차지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요구안을 임금협상이 아니라 불법과건 특별교섭에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투쟁하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비정규직지회와 소통을 더 활발히 하면서 본교섭에서 비정규직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함.
-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이번 현대차 임금교섭에서 분리하고 원하청 공동투쟁과 비정규직 주체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직 관련 교섭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향후 현대차지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음.

- 현대차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3천 명 신규채용 방안은 회사가 사내하청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던진 안인데 분리교섭으로 가면 그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이 일괄타결로 마무리되지 않고 또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피곤한 상황”이라고 토로함.

### ◆ SJM과 만도의 용역폭력 사태 및 직장폐쇄 논란

○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직장폐쇄 조치와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사태 문제는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 정국에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

- 지난 7월 27일 국내 유일 자동차용 벨로우즈 생산업체인 SJM 안산공장과 국내 최대 부품사인 (주)만도 평택·문막·익산공장에 기습적으로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경비용역이 투입되어 파업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함. 특히 SJM 안산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주)와 부딪치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함.

※ 컨택터스(주)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파견업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파견업체로도 허가받은 사설경비업체인 것으로 알려짐.

※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이 8월 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컨택터스(주)는 2006년 자본금 2억 원에 종업원 5명으로 출발한 기업인데 현재는 통상 3백~3천 명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8월 8일 금속노조는 서울 한라그룹 본사와 경기 안산 SJM 공장 앞에서 잇따라 확대간부 집회를 개최하여, “SJM, 만도 사태는 금속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사용자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각 산별연맹과 함께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만도와 SJM의 폭력사태 및 직장폐쇄 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비롯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냄.

○ SJM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사설경비업체 컨택터스(주)와 SJM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혐의도 받고 있음.

- 컨택터스(주)가 파업 사업장에 생산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 컨택터스(주)가 올해 3~6월에 채용포털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에는 조선소·새시시공업체·자동차 부품사 같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근무할 인력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컨택터스의 파견사업 운영 등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파견업 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함.
- 컨택터스(주)를 이용해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진압한 SJM도 파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고, 동시에 SJM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받고 있음.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SJM이 파견업체로부터 60여 명의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파견법에 의하면 3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고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위반 확인 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힘.
  - SJM이 취업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남아공 출신 노동자 1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노동계는 이들 두 파업 사업장에 대해 용역업체의 폭력사태 문제와 함께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 후 회사 측이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사측의 ‘노조 와해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공격적 직장폐쇄 → 용역투입 · 강제진압 → 친사용자 성향의 복수노조 등장 → 기존 노조 무력화’라는 공식이 앞서 발레오만도 · KEC · 상신브레이크 등의 사례에서 입증된 시나리오라는 것임.
    - 이들 사업장에서도 컨택터스(주)가 회사 측의 직장폐쇄 후 투입돼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내몰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며, 각각의 회사 모두에서 새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노조는 소수로 전락하거나 교섭권을 빼앗겼다는 주장임.
  - SJM 안산공장과 만도의 경우에도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 어김없이 각각 새로운 노조가 설립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됨.
    - SJM은 폭력사태가 일어난 지난 7월 27일 이후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새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만도 또한 직장폐쇄 후 4일 만인 7월 30일 제2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짐. 새 노조는 설립 6일 만인 8월 5일 “전체 조합원 2천264명 중 85.5%인 1천963명이 가입했다”고 밝힘.
  -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강조함.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측 개입에 의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수년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이 나올 때쯤이면 기존 노조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SJM과 만도의 경우 직장폐쇄 조치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판례도 조합원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함. 또 부분파업 중 직장폐쇄를 단행한 SJM에 대해서도 “부분파업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 만도는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 해제를 권고하자 8월 14일 직장폐쇄 조치를 푼 것으로 알려짐.

### ◆ 국회 환노위, ‘쌍용자동차’ 및 ‘폭력 용역 청문회’ 9월 개최 추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중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추진하기로 결정함.

- 김성태(새누리당)·홍영표(민주통합당) 환노위 간사는 8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노위가 9월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사건에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들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27일에 열어 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여야가 쌍용차 청문회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3년째 이어져온 쌍용차 해고·휴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음.

- 민주당은 그동안 쌍용차 정리해고의 법적·절차적 문제점과 해고자들의 연이은 자살사태 규명을 위한 환노위 차원의 소위 구성을 요구해 왔으며, 청문회 개최 결정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없지 않은 분위기임.

- 또 컨택터스에 의한 SJM 노조원 폭력사건 진실규명도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 7월 27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의 직장폐쇄로 공론화된 경비용역업체 폭력 사태에 대한 청문회에는 컨택터스 대표를 비롯해 SJM 노사 양측 대표자들이 청문회장에 설 것으로 보이며,

- 폭력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기용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환노위는 삼성전자 산업재해 소위 구성과 MBC 파업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는 계속 논의기로 함.

- 민주통합당은 삼성전자 산업재해 소위 구성이 필요하고 MBC 청문회 또한 환노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소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임.

◆ **MBC, 파업참가자에 대한 인사명령과 <PD수첩> 작가 해고를 둘러싼 공방 기열**

- 언론노조 MBC본부는 회사 측이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끝난 뒤에도 보복성 인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MBC 노동조합은 8월 20일자 비대위 특보를 통해, 사측이 지난 18일로 정직 1개월 징계가 풀린 조합원 4명과 대기발령 조합원 16명 등 20명에게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문화방송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힘.
    - 교육 대상자는 기자 9명, 카메라 기자 2명, 아나운서 2명, 카메라 감독 1명, 시사교양 PD 4명, 라디오 PD 2명 등임.
    - 노조는 이들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함.
  -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징계에 이어 교육명령까지 내린 것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며 또 노조원들을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격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함.
    - 노조는 지난달에도 파업 후 회사 측이 파업참가자 50여 명에 대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미래전략실, 신사옥건설국, 용인드라마아개발단’ 등으로 전보조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MBC 측은 “교육명령은 징계가 아니라 직원에 대한 투자 개념의 연수”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라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음.
- 한편 8월 21일로 예정된 MBC <PD수첩>이 결방됨에 따라 방송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8월 21일로 재개 예정이던 <PD수첩>은 작가 전원(6명)이 해고되는 바람에 결국 결방되는 사태에 직면함.
  - 지난달 18일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후 <PD수첩> 제작진은 8월 21일로 방송 재개를 결정했지만, 지난달 24일 회사 측이 작가 6명을 전원 해고하면서 방송 제작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임.
  - 900여 명의 시사교양 작가들이 <PD수첩> 대체작가 투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방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음.
    - 4개 방송사 구성작가협의회와 외주제작사 작가들은 7월 30일 오전 결의대회를 열어 “부당하게 해고된 PD수첩 작가들을 대체해 영혼과 양심을 빼앗긴 부역작

가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6명 전원이 복귀할 때까지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밝힘.

- 한국방송작가협회는 7월 31일 MBC <PD수첩> 작가 해고 사태에 즈음해 긴급 확대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 차원의 전면 대응 ▲8월 1일부터 전 장르 작가 대상 해고 철회·원상복귀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 ▲김재철 사장 면담 요청 등을 결의한 바 있음.
- MBC 노조는 업무 복귀 이후의 한 달을 평가하면서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 경영진이 <PD수첩>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정권에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방송 파행을 방치하거나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PD수첩> 작가 해고 문제에 대해 회사 측은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작가 해고 사태 이후 현재 <PD수첩> 제작진은 방송 제작을 위한 내부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방송 파행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희망퇴직 반대” 파업 전개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8월 13일 부산공장에서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전개함.
  -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지회장 박종규)는 13일 오후 2시45분에서 4시45분까지 부산 공장에서 주야 근무조가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임.
    - 이번 파업은 2000년 9월 르노삼성자동차 출범 후 첫 번째 파업임.
    - 노조는 지난해 8월에서야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체 임직원 5500여 명 중 200여 명이 가입해 있음.
    - 르노삼성은 그동안 노조 대신 ‘사원대표자위원회’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진행해 왔음.
  - 르노삼성 노조는 14일 오전 회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강도를 견디며 생산을 극대화한 노동자들과 르노삼성차를 살리기 위해 애써 온 부산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함.
- 노동계는 르노삼성 노조의 이번 파업이 회사의 잘못된 수익구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는 성격의 투쟁이라고 분석함.
  - 르노삼성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본 이후 지속적인 영업 실적 악화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구조조정의 뒤에는 르노그룹의 먹튀 행각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르노삼성차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규모가 4~5배나 큰 한국GM을 제치고 내수 3위까지 올랐지만, 지난 6월에는 쌍용차에 밀리면서 5개 완성차 중 꼴찌로 추락하기도 하였음.
    - 노동계는 르노삼성차가 구조조정 명분으로 경영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음. 노조 박종규 지회장은 “경제위기의 원인은 차를 팔수록 르노그룹이 이익을 챙기고 르노삼성차는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잘못된 수익구조에 있다”고 비판함. 실제로 르노삼성차가 2010년 27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34억 원(0.1%)에 불과하였는데, 매출액이 2010년의 절반 수준이던 2007년 영업이익이 2천167억 원(7.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출액이 늘어남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 것임.
    -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 르노그룹의 자본유출을 지목하고 있음. 즉 르노삼성차가 기술사용료 등의 명분으로 모기업인 르노닛산에 지불하는 비용이 차 한 대당 23만 3천 원에서 2009년 113만 원까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주장임.
  - 이에 따라 노조는 이처럼 르노삼성의 특이한 수익구조로 인해 경영위기가 발생한 것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모면하려 하는 회사 측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앞서 르노삼성자동차는 8월 9일 연구·개발과 디자인 부문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희망퇴직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8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체 임직원 5,500여 명 중 연구개발(R&D) 및 디자인 부문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4,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공표함.
  - 이에 대해 르노삼성 노조는 회사 측이 정한 구체적인 퇴출규모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 직원의 20~30% 수준(1천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리해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한편 르노삼성차 사원대표자위원회는 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사원대표자위원회는 22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노조 전환에 대한 사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노조 전환 안건이 통과되면 사원대표자위원회는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와는 별도의 기업별노조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사원대표위원회는 16일 사내 게시물을 통해 “르노삼성차지회의 정책은 조합원들

의 희생과 아픔을 동반할 수 있다”며 “(지회로부터) 교섭권을 넘겨받아 희망퇴직과 관련한 노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베스킨라빈스 서희산업, 노시간 합의로 파업 종결**

-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BR)코리아의 하청업체인 서희산업 노조가 파업 86일 만인 8월 2일 회사와 고용안정과 원하청 차별 해소 등에 합의함.
  - 비알코리아, 서희산업, 서희산업 노조 및 화학노련 등은 8월 1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2일 오전 한국노총 대의회의실에서 노사합의안 조인식을 가짐.
  - 지난 5월 9일 서희산업 노조가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86일 만에 합의점을 도출함. 서희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간의 하계휴가를 보낸 뒤 8월 9일 현장업무에 복귀함.
  - 노사는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고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건 등을 취하하기로 함. 노조는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발도 취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원청기업과 하청업체 노사가 함께 서명한 이번 합의의 핵심은 ‘원청업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보장’임.
  - 노사 양측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비알코리아 직원에 준하는 수준의 고용 보장, 징계 철회, 파업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 불가 등의 내용에 의견을 모음.
    - 서희산업 노조가 원청인 비알코리아로의 소속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은 노동자들의 정년(만 57세)을 보장하기로 함.
    - 또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알코리아 음성공장의 생산수급자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보장되도록 함.
    - 아울러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노사는 원하청 차별 해소를 위해 서희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합의함.
  - 노사는 서희산업과 비알코리아 직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과 복지수준을 맞추기로 한 것임.
  - 노조 관계자는 “원청의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관철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원청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고용보장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불법하도급 근절과 하청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을 금지하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 여야 정치권, “정년 만 60세 법제화 추진”

- 7월 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내년부터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황우여 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후에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며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이를 시행토록 권고하여 장기적으로 만 65세, 2020년에는 만 70세까지 정년을 늘려 정년제도 자체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 황 대표는 또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고 독일처럼 일정 연령 이후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감소분을 연금으로 보충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힘.
  -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 의원은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위반 시 벌칙향도 신설함.
    - 이 의원은 정년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함.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조와 합의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음.
  - 민주통합당도 2일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이 60세 정년보장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임.
-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신중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한국노총은 “여야 합의로 60세 정년 법제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황 대표의 정년 60세 법제화 발언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당론으로 채택해 힘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높임.

- 정부는 신중한 입장임.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특성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청년일자리 상충 문제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년을 연장해서 청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령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경직적인 노동시장, 기업별 경쟁 환경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함.
- 경영계는 고용연장을 통한 노후대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함. 한국경총 관계자는 “(황대표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규제로 기업 내 업무 부진자의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년마저 60세로 강제하면 기업들의 고용의지가 크게 꺾일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내보임.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유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고 주문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8월 7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현행 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1만 5천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고용노동부, 「신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8월 17일 가수, 무용수, 연기자, 보조출연자 등 연예 예술인도 본인이

-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음.
  - 하지만 오는 11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가입 대상은 예술인 가운데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임. 다만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창작활동만 하는 창작예술인과 교수·강사 등 예술교육가는 제외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KL**

(강병식,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